

1. 개정이유

「미술진흥법」 제18조의 미술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절차 등 마련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폐업 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직권말소의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10조의3제1항·제2항)

나. 영업정지 등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1조 및 별표1)

다. 영업 승계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

라. 과태료 부과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마.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23조 및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예정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11조·제12조·제21조·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3. 영업소의 소재지(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4. 미술 서비스업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0조의2(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술 서비스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정지 등의 부과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영업의 승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3조(과태료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

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총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마.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바.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1호	영업 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2호	영업 폐쇄			
다. 법 제18조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영업 폐쇄			
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 폐쇄	
마.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19조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폐쇄	

[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미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바.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u> <u>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u> <u>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u> <u>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u> <u>사항이 기재된 문화체육관광부령</u> <u>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u> <u>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u> <u>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u> <u>시·군·구가 있는 경우 시장·군</u> <u>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u> <u>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u> <u>제출하여야 한다.</u> <u>1. 대표자의 성명</u> <u>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u> <u>3. 영업소의 소재지(주된 영업소</u> <u>를 말한다)</u> <u>4. 미술 서비스업의 종류</u> <u>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u> <u>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u>
<u><신 설></u>	

<신 설>

<신 설>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제10조의 2(폐업신고의 절차) ①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미술 서

<신 설>

비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신 설>

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조의 3(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제6항 단서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술 서비스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영업정지 등의 부과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의 부과기준은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 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영업의 승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营业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

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

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

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
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3조(과태료 기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2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연 락 처	(044) 203 - 2748